



활동지원사를 위한

장애인 학대 신고 안내

1644-8295

장애인차별상담 및 학대신고



학대를 세상에 알리다

지연씨는 옆집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비명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지연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집을 방문하였고
쇠약한 모습과 얼굴,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는 우성씨를 만났습니다.
우성씨는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매일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엄마가 화나면 저를 베란다에 가둬요. 그리고 음식을 남기면 엄마한테 맞아요.
뺨도 때리고 머리도 때려요. 아파서 매일 울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우성씨를 학대 행위자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분리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우성씨는 기관의 지원으로 치료와 보호를 받으며
지역의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면
무심코 넘기지 말고 주저없이 신고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학대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학대 신고는
단지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잃어버린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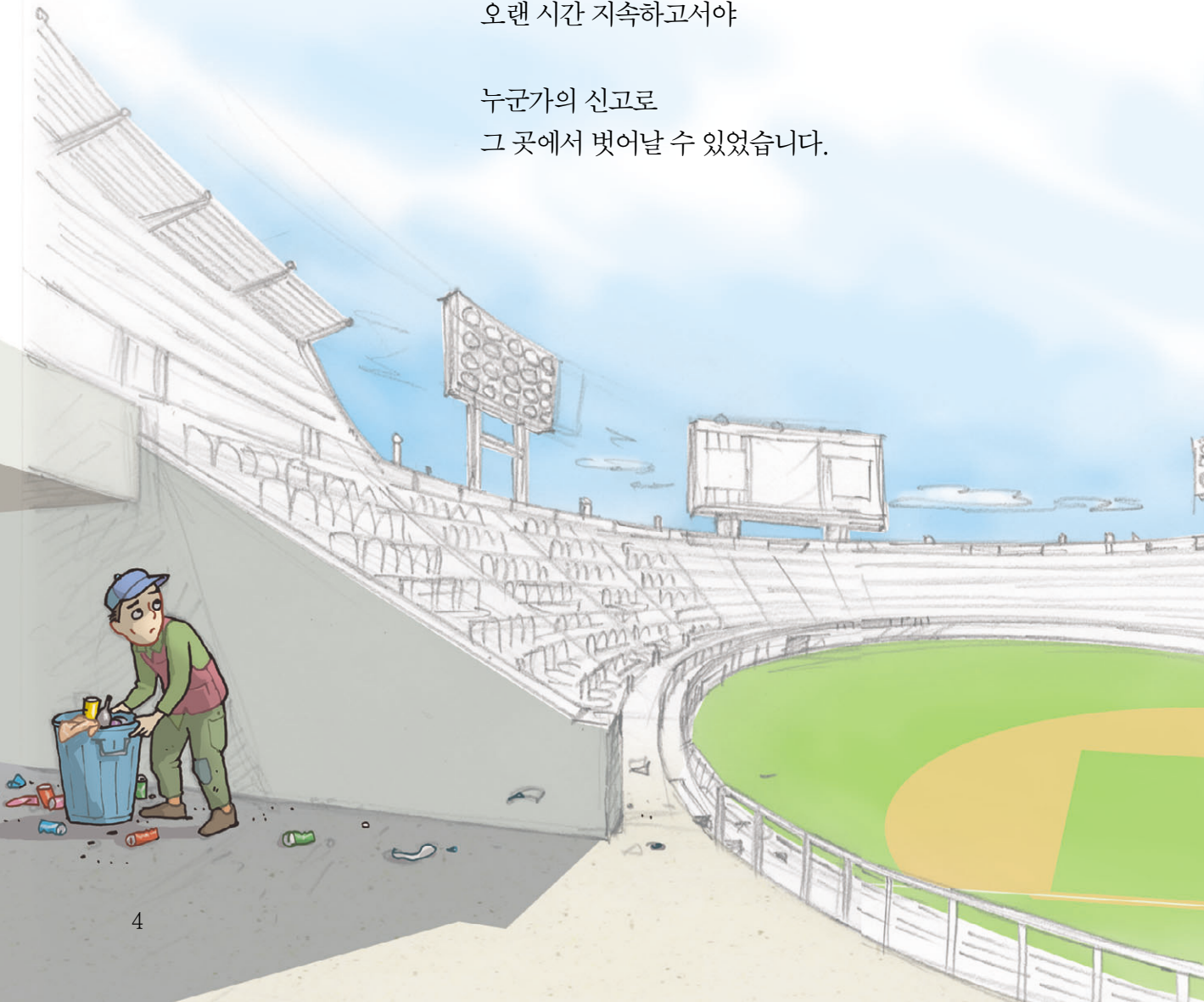


‘신고’의 의미

관중들의 환호로 북적이는 야구장,
그 곳 쓰레기장 컨테이너에
지적장애인 준호씨가 살고 있습니다.

십 수년간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밤낮없이 분리수거 일을 하며
제대로 된 식사는 물론,
담배 반 개비씩 나눠 피며 돈을 아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의 생활을 . . .
오랜 시간 지속하고서야

누군가의 신고로
그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준호씨는 자립생활을 하며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출과 산책을 하면서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양복을 샀고, 그에 어울리는 구두도 사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준호씨의 새로운 삶과 일상을 보면서
'신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 오늘,
당신의 관심과 용기가
피해장애인에게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잠깐!

장애인 학대 신고의 특성

- 장애로 인하여 당사자 스스로 학대 피해를 신고하거나 학대 사실을 밝히기 어려움
- 장애인 학대는 타인의 신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학대란?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인 학대는 여러 학대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 학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학대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등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대표행위 폭행, 상해, 감금, 신체의 구속, 체벌, 기합 등

반복적인 상처는 학대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혜영씨는 유경씨의 외출을 위해 옷입는 것을 돕던 중 유경씨의 등과 팔 안쪽에 난 멍과 상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상처가 난 이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유경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혜영씨는 며칠 뒤 유경씨의 다리가 부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도 된다고 유경씨를 조심스럽게 설득하였습니다.

유경씨는 남편이 자주 폭행 한다는 것을 말하였고 혜영씨는 이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알려왔습니다.



잠깐!

때리지 않아도 신체적 학대라고요?

“화장실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요.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요.”

“매일 졸음이 오는 약을 먹어요. 낮에도 잠을 자고 정신이 몽롱해요.”

“대변을 많이 본다고 밥을 아주 조금 줘요.”

“소리 지르고 발을 구른다고 발을 묶어놨어요.”

정서적 학대

언어적·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장애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대표행위 폭언, 협박, 모욕, 무시, 비하, 따돌림, 강요 등

더러워 ...

유빈이는 올해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리고
특히 하교할 때 울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유빈이의 등하교를 동행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는
유빈이에게 “학교 선생님 싫어, 무서워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선생님이 왜 무섭냐고 묻자,
유빈이는 ‘선생님이 말을 무섭게 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밥을 흘려서 ‘더럽다’ 고 화를 내고
침을 흘린다며 ‘자기 옆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고 얘기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잠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라고요?

“걸음걸이가 촌추는 것처럼 우스꽝스럽다고 망신을 줘요.”

“장애인이 파마해봤자 누가 봐주냐고 하면서 파마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해요.”

“가족들이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려고 해요.”

경제적 착취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노동력, 재산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것

대표행위 사기, 준사기, 횡령, 배임, 노동력 착취, 명의 도용 등



양심은 챙겨가시고
통장은 돌려주세요~

지적장애가 있는 미애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고모가 수급비 통장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미애씨는 고모가 한 달에 한 번 가져다 주는 반찬과 식료품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었습니다.

미애씨는 고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먹을 것을 사주는 것으로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줄 돈이 없다’ 며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활동지원사는 고모에게 항의하였으나

미애씨에게 통장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활동지원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잠깐!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학대라고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지인이 관리해준다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아요.”

“핸드폰을 개설하러 갔는데 이미 제 명의로 여러 대의 핸드폰이 있어요.”

“같이 동업하자고 신용카드, 신분증, 인감도장, 휴대전화를 요구해요.”

“누나가 토마토 농장에 데려가서 매일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줘요.”

성적 학대

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장애인에게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

대표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신체 촬영, 유사성행위, 성매매 강요 등

가만두지 않겠어!

지은씨는 지적장애인으로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지은씨의 사정을 알고 이웃에 사는 삼촌이 집에 자주 방문하여 사랑한다면서 추행을 하였고 성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은씨는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삼촌의 협박과 어머니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려질 것이 두려워 꼭 참고 지냈습니다.

다행히 활동지원사가 삼촌에게 추행을 당하는 지은씨를 목격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지은씨는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오해

왜 저항하지 않았나요?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항하면 더 큰 폭력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기도 하며 가해자의 얼굴이 무서워서, 때릴 것 같아서, 가족에게 말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관계를 '동의'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기억을 하지 못하나요?

성폭력 피해의 충격이나 장애로 인하여 시간, 방향, 숫자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의 특성과 개인의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잠깐!

직접 접촉이 없어도 성적 학대라고요?

“자꾸 핸드폰으로 야한 영상을 보내서 싫어요.”

“제 몸을 촬영하고 유포했어요.”

“살 빼라고 하면서 제 몸을 만져요.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장난인데 어떡냐고 그래요.”

“옷을 벗고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해요.”

유기 방임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것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후견인, 활동지원사, 복지시설 종사자, 고용주 등이 모두 포함됨.

학대 신고... 지금도 늦지 않아요

미희씨는 오늘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도 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방임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승호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승호군은 뇌병변과 시각, 중복장애로 열세 살이 넘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외출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승호군이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며
소량의 물만 주고
소변을 보아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활동지원사인 미희씨가 올때까지
승호군은 젖은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미희씨는 현재 승호군에게 활동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승호군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잠깐!

방치하는 것도 학대라고요?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주지 않아요.”

“많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쓰레기가 쌓여있고 악취가 나는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저를 병원에 두고 연락을 끊었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래의 문항은 장애인 학대 징후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특정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이전과 다르게 우울해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등 감정이 크게 동요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	
3	갑작스럽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다.	
4	성기나 항문에 아픔을 호소하거나 멍과 상처가 있다.	
5	알 수 없는 채무독촉장이 오거나 돈이나 개인 물품이 계속 분실된다.	
6	타인이 통장을 관리하여 본인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임의로 돈을 사용한다.	
7	오랫동안 씻지 않은 모습이며 입고 있는 옷이 지저분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8	위험한 곳에서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곳에 환경이 열악하다.	
9	식사를 하지 못하여 쇠약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로 보인다.	
10	기본적인 신변처리가 어려우나 누구에게도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	

체크리스트 중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전화해주세요!

장애인 학대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장애인 학대 신고방법

☎ 1644-8295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12 경찰서로 신고해주세요.

*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 방법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우편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 화 1644-8295, 031-851-1007

문 자 010-3341-1005

팩 스 031-851-1008

방문/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이 메 일 ggndrc@gmail.com

온 라 인 홈페이지(<https://www.ggnaapd.or.kr>) > 온라인 상담실 > 신청하기

신고하실 때,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장애인의 안전여부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을 알려주시면
피해자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되나요?

신고자 비밀 보호

보다 많은 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이 필수입니다.
학대 신고 시 법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여
불이익과 곤경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장애인 학대사건 범죄 신고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는 가명 혹은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가능.
- 누구든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 금지.
- 신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불이익조치가 행해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저는 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혹시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신고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장애인 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학대 신고 의무자란

당신의 주변에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학대 신고 의무자는 장애인 학대의 정황을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의 신고 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제 2항)」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사회복지 관련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의료 관련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교육기관 관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 강사
상담소 및 지원기관	성폭력·성매매 피해, 가정폭력,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등 관련 상담소 및 보호기관의 종사자



“ 학대 피해 신고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장애인 학대 사례로 판정이 되면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학대의 재발 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

-
- 응급조치**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쉼터 등 안전한 장소 확인, 입소 지원
치료나 즉각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인도
-
- 복지지원**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 진단 및 등록 신청 지원, 긴급복지서비스 연계 등
-
- 의료지원** 검진, 진단, 통원치료, 입원치료 연계 등
-
- 사법지원** 수사 절차 및 소송지원, 학대 행위자 고발, 법률구조기관 연계,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지원 등
-
-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심리 진단 및 심리 치료, 심리 상담 지원 등
-
- 거주지원** 쉼터 등 응급보호, 체험홈 입주, 임대주택신청, 자립 지원 등
-
- 기타지원** 교육, 중재, 정보제공 등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 소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대응 전문 기관입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장애인 차별상담 및 학대신고를 받고 피해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 예방 교육이 듣고 싶으신가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당사자 권리 옹호교육,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장애 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교육신청 (<https://www.ggnaapd.or.kr>)
홈페이지 > 인권교육 > 교육신청 > 신청하기

문의전화
031-851-1007



활동지원사를 위한 장애인 학대 신고 안내

발행처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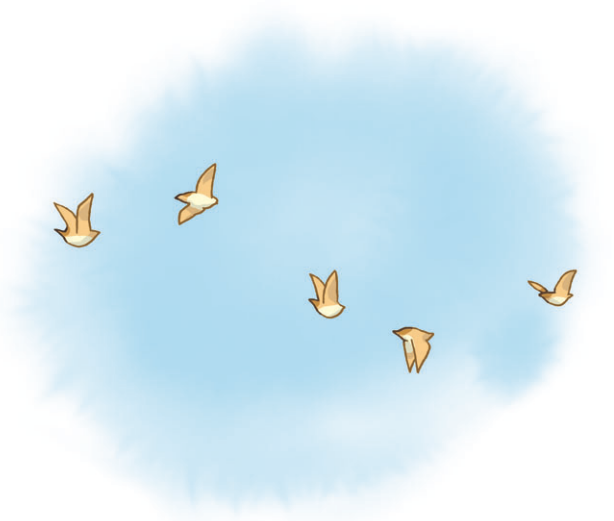
발행일 2020.12.

편집제작 젊은기획



주소 (11813)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전화 031-851-1007 팩스 031-851-1008 메일 ggndrc@gmail.com 홈페이지 www.ggnaapd.or.kr



학대 예방은 당신의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Gyeonggibukb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